

2026학년도 2학기 법학과 졸업시험 안내

1. 졸업시험 일정

- 1차 시험 - 11월 19일(목) 18:00~20:00
- 2차 시험 - 11월 26일(목) 18:00~20:00 [재시험]

2. 졸업시험 장소

- 응시자 명단 파악 후 추후 공지 예정
- 학과 홈페이지 공지 수시 확인 요망

3. 제출 및 신청 기한 ***기한 엄수!**

- 졸업시험 응시 신청 : ~10/29(목) 13시까지 >> 10/29(목) 이후 졸업시험 추가 신청 불가
- 졸업시험 대체 신청 : ~12/11(금) 13시까지
- 졸업논문 대체 신청 : ~10/29(목) 13시까지
- 졸업논문 제출 : ~12/11(금) 13시까지

4. 신청 대상

법학 1전공, 2전공 수료생 및 졸업대상자(조기졸업 대상자 포함)

※ 취업자 및 기타시험 합격자도 종합시험 통과 필수(취업으로 인한 면제 불가)

5.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신청서	졸업시험 신청서(붙임) 미제출 시 응시 및 대체 불가
복수전공생	신청서의 전공란에 본인의 1전공 기재
제출 방법	①직접 제출 ②이메일 제출 (law26@catholic.ac.kr) ※ 이메일 제출 시 파일명 예시 - 졸업시험 응시 신청 : [00과 202021234 김가대] 졸업시험 신청서 - 졸업시험 대체 신청 : [00과 202021234 김가대] 졸업시험 면제 신청서 & [00과 202021234 김가대] 영어성적

※ 유의사항

- 제출한 파일명이 예시와 상이할 경우 확인이 지연될 수 있음
- 제출 확인 및 완료에 대하여 1주 이상 미회신 시 과사무실로 문의 바람

6. 졸업요건

■ 종합시험 원칙

- 시험과목 : 헌법/민법/형법(주관식 논술형)

졸업시험 통과		재시험 필요		재시험 불가
100~90점	89~80점	79~70점	69~60점	59~0점
A	B	C	D	F

※ 3과목 전체 통과해야 함

※ C ~ D : 해당과목 재시험 (B는 원할 경우 가능)

※ 각 과목 F (60점미만) → 재시험 불가

■ 종합시험 대체

- 아래의 (1) ~ (3)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가능

구분	기준	면제
(1) 외부기관 공인 영어성적	TOEIC 750점 이상	졸업시험 면제
	TOEIC 700점 이상	2과목 면제
	TOEIC 650점 이상	1과목 면제
(2) 교내 학술제 입상	최우수	3과목 면제
	우수	2과목 면제
	장려	1과목 면제
(3) 외국인 학생 특례	TOPIK 5급 취득	2과목 면제
	TOPIK 4급 취득	1과목 면제

※ 유의사항

- 면제 신청 시 졸업시험 신청서에 영어성적, 학술제 수상내용, 면제 과목을 기재하여 제출
- TOEIC 외 영어성적 제출자: 공인기관의 TOEIC 점수환산표를 함께 제출

■ 면제 중복합산 가능 예시

- 학술제 우수 2과목 + 학술제 장려 1과목 → 총 3과목 면제
- 학술제 우수 2과목 + TOEIC 650점 1과목 → 총 3과목 면제
- TOEIC 700점 2과목 + TOEIC 650점 1과목 → 총 3과목 면제

■ 졸업논문(예외)

·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예. 졸업시험일에 외국 거주, 경찰학교 수련으로 인해 졸업시험일에 외출 불가 등)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졸업논문으로 종합시험을 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졸업논문은 헌법, 민법, 형법 3과목 모두 작성해야 하며(주제는 각 과목 담당 교수와 상의), 학술제 입상, 영어시험 성적 등으로 면제된 과목은 졸업논문도 면제됨.

**※ 서류 미제출로 인해 졸업이 불가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졸업요건 및 제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시험 예상문제]

1. 민법

(1) 민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민법의 법원에 대해 논하시오.

(2)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해 논하시오.

(3) 유동적 무효에 대해 논하시오.

2. 형법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2)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해 논하시오.

(3) 형법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참고하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 논하시오.

3. 헌법

(1) 민주주의원리의 기본이념과 실현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헌법상 대한민국 정부형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